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. 1. 31 선고 2017가단615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당진시 C 전 3,015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경량철골조 쉼라이트지붕 단층 돈분장 376.3m²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17. 11. 30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,826,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세창

별지